

의안 번호	741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09. 12 . 2 (수) · 중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09. 12 . 3(목)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09. 12. 10(목)

2. 제안이유

- 가. 국·과 명칭을 부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명칭으로 개정하고
- 나. 창의혁신 사무 소관부서를 변경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주민생활지원국”을 “생활지원국”으로 변경(안 제3조)
- 나. 총무국에 두는 과의 명칭 및 소관사무 일부 변경(안 제5조)
 - 지방세과 ⇒ 세무과
 - “혁신분권”업무 소관부서 변경(자치행정과 ⇒ 기획감사실)
- 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의 명칭 변경(안 제6조)
 - 주민생활지원과 ⇒ 생활지원과
- 라. 건설도시국에 두는 과의 명칭 변경(안 제7조)
 - 재난안전관리과 ⇒ 재난관리과

4. 참고사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5.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6. 근거법규

가. 「지방자치법」 제112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7. 검토의견 : 의견없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u>총무국·주민생활지원국·건설도시국</u>을 둔다.</p>	<p>제3조(국의 설치) ----- ----- <u>생활지원국</u>----- -----.</p>
<p>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①총무국에 총무과·자치행정과·문화체육과·<u>지방세과</u> 및 민원지적과를 둔다. ② (생략) 1. (생략) 2. 자치행정, 주민자치센터운영지원 민간협력, <u>혁신분권</u>, 공보행정 평생학습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 6. (생략)</p>	<p>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① ----- ----- <u>세무과</u>----- -----.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u><삭 제></u>----- ----- 3. ~ 6. (현행과 같음)</p>
<p>제6조(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 ①<u>주민생활지원국</u>에 <u>주민생활지원과</u>·사회복지과·지역경제과·환경위생과 및 환경미화를 둔다. ②<u>주민생활지원국장</u>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생략)</p>	<p>제6조(생활지원국에 두는 과) ① <u>생활지원국</u>에 <u>생활지원과</u>----- ----- -----. ②<u>생활지원국장</u>----- -----. 1.~ 6.(현행과 같음)</p>
<p>제7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①건설도시국에 <u>건설과·재난안전관리과</u>·도시과·교통행정과·건축허가과·녹지공원과 및 시설지원단을 둔다. ② (생략)</p>	<p>제7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①-- -----<u>재난관리과</u> ----- ----- -----. ② (현행과 같음)</p>